

協同組合의 本質과 諸原則

— 林業協同組合의 創設을 促求하며 —

崔 玟 休 / 林業研究院 經營部長

1. 協同體와 協同組合

地球上의 많은 生命體들은 個體 홀로서 生存·發展하기 어려운 環境에서 類類相從 協同體를 構成하여 이에 對處한다. 菌類社會에서 볼 수 있는 反射의 協同, 개미나 꿀벌社會에서 볼 수 있는 本能的 協同, 戰爭이나 洪水·旱魃時에 볼 수 있는 人類社會의 生存的 協同 現象등은 生物學的 協同形態라 할 것이며, 他的 犧牲을 前提로 競爭에 이기기 爲한 競爭的 協同(例: 企業聯合, 協同組合, 國家間的 同盟等)과, 宗教, 慈善 團體에서 볼 수 있는 利他的 協同 등은 人間社會에만 固有한 協同形態의 例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같은 人間社會의 協同體 모두가 協同組合이라 할 수는 없다. 協同體와 協同組合을 엄밀히 區別하기는 쉽지 않으나, 오늘날 協同組合은 競爭的이며 經濟的인 協同體라 할 것이며, 一般的인 協同體가 共同社會(Gemeinschaft)에 屬한다면, 協同組合은 利益社會(Gesellschaft)에 屬하는 上級社會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共同社會는 地緣이나 血緣등을 따라 人間社會에 普遍的으로 存在해왔던 社會結合의 形態임에 反하여, 利益社會는 近代社會에 들어와서, 人間の 自我發見과 個人의 主體性이 確立된 以後로 血緣이나 地緣을 넘어서 個人들의 利害關係가 合致된 共同目的을

가지고 結合된 人格團體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協同組合은 英國을 中心으로 하는 資本主義發展段階에서 競爭으로부터 疏外된 勞動者와 小工業者 및 小農들이 獨點資本의 收奪로부터 自己防禦를 目的으로 發生되었다는 點에 그 歷史的 特性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協同組合은 資本主義經濟制度 속에서, 經濟的 弱者들이, 資本社會에 順應하면서, 自身들의 經濟的 地位를 높여, 均衡있고 公正한 社會를 實現하기 위해, 自發的으로 組成한 人的 結合體라 定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協同組合의 理念은, 바로 우리나라 經濟憲法의 理念과 脈을 같이 한다 할 것이며, 憲法 第123條에 明示된 바와 같이, 農漁民의 自動組織은 國家次元에서 積極 支援育成함을 政策目的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여기에서 自助組織이란 바로 農·林·畜·水產業에 從事하고 있는 사람들의 協同體인 農業協同組合, 林業協同組合, 畜産協同組合 그리고 水産協同組合을 뜻한다 할 것이다. 이 가운데 農協, 畜協 및 水協은 이미 發足を 보고 活發이 움직이고 있으나, 林協은 아직 結成을 보지 못하고 있는 段階에 있으며, 有名無實한 山林契·山林組合의 存在가 其實은 準行政機關이지 協同組合이 아닌데도,

「組合」이란 이름이 들어 있어, 오히려 새 時代가 要請하는 林業協同組合의 誕生을 가로막고 있는지도 모른다.

말이 協同組合이 自發的으로 組織된 團體라고는 하나, 近代의 市民意識과 資本主義經濟가 成熟치 못한 開發途上國에 있어서, 오히려 政府가 先導的으로 協同組合의 組織과 活動을 助長하고 있는 경우가 支配的이라 할 것이다.

2. 協同組合의 本質

가. 協同組合은 經濟的 弱者들의 團體이다. 資本主義經濟는 自由競爭의 바탕위에서 發展하게 마련이나, 그 競爭過程속에서 落伍된 者, 例컨대 賃金勞動者, 農林漁民, 中小企業者같은 이들이, 大資本의 支配와 壓迫으로부터 自己防衛를 위하여 만든 團體이다.

나. 協同組合은 經濟的 獨立者들의 團體이다. 그들이 비록 資本社會下의 經濟的 弱者들이기는 하나, 各己 經濟的 獨立性を 維持하고 있으므로 本來의 生産關係를 獨自的으로 維持하면서, 一定範圍의 經濟活動에 限해서만 組合을 中心으로 協同하게 된다. 이런 點에서 株式會社가 經營者와 所有者가 完全히 分離되어 있는 것과 다르다.

다. 協同組合은 非營利團體이다. 組合員과 組合은 異身同體의 關係이므로 그 經濟活動의 結果 發生되는 利益은 組合員에게 귀속되는 것이 조합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를 利益 또는 剩餘金이라 부르지 利潤이라 부르지는 않는다.

라. 協同組合은 經濟團體이다. 經濟的 弱者들이 모인 協同組合은 어디까지나 組合員의 家計나 經濟活動의 向上과 發展을 위

한 經濟團體이지 營利團體도 利益團體도 慈善團體도 아니다. 그러므로 協同組合은 企業經營과 똑같은 合理的 經營이 要求되고, 投機나 冒險이 排除되며 급격한 成長보다도 사업실패와 破産을 경계해야 한다.

마. 協同組合은 人的團體이며 民主的 團體이다. 組合員은 經濟的 弱者들이므로 資本力이 크지 못해 人間的結合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따라서 1人 1票의 議決權을 가지고 民主方式으로 운영한다는 點이 株式會社와 다르다.

바. 協同組合은 相扶相助의 團體이며, 自主自助의 團體이다. 協同組合을 만든 動機는 經濟的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 手段方法은 꼭 資本主義의 특징인 個人主義나 利潤追求 및 自由競爭을 따르는 것이 아니며, 組合員相互間에 相扶相助 할 뿐 競爭을 排除한다. 또한 協同組合은 國家나 資本家 등 他人의 힘을 빌지 않고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開途國에서 흔히 國家나 協同組合을 保護育成하게 되지만 그 線을 넘어 운영에 간섭해서는 아니 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사. 協同組合은 地域團體이다. 一定地域에 거주하는 組合員이라야 人的結合이 可能하므로 組合構成의 地域範圍를 定하는 일이 매우 重要하다.

앞서 지적한 協同組合의 本質을 要約한다면, 一定地域을 中心으로 經營的 弱者들끼리 結合된 非營利 經濟團體이며, 自由로 이 加入하고 民主的으로 運營하되 相扶相助와 自主自助를 根本理念으로 하는 人間團體라 할 수 있다.

이러한 點에서 協同組合은 株式會社나 勞動組合 및 銀行과도 다르며 同業組合이나 企業聯合과도 區別된다.

3. 協同組合의 6 原則

協同組合의 100餘年間の 經驗에 비추어 이를 成功的으로 運營하려면 어떻게 組織하고 運營하며 管理해야 하는가에 對한 指針이 國際協同組合聯盟(ICA)을 通하여 確立되기에 이르렀다.

가. 組合公關의 原則

이는 組合員의 要件만 갖춘者라면 누구나 自由로이 加入 또는 脫退할 수 있다는 原則이며, 門戶開放의 原則이라고도 한다.

나. 民主運營의 原則

이는 1人1票의 原則이라고도 하며, 協同組合이 資本의 組織이 아니고 人格의 結合이라는 點에서 平等하게 參與하는것은 當然하다. 이 原則을 通하여 協同組合은 資本이나 權力에 의한 專制로부터 獨自性を 維持할 수 있게된다.

다. 利用高配當의 原則

協同組合은 그 事業活動을 通한 剩餘金을 組合員들間에 어떻게 配當하느냐에 대하여 여러가지 基準이 있을 수 있겠으나 룯치데일(Rochdale)원칙에 따라 利用高에 의한 配當原則이 採擇하게 되었다.

이는 組合員들의 參與意慾을 促進시키는 意味도 있는것이며, 1人1票原則이 協同

組合 平等思想의 產物이라면 利用高配當의 原則은 그의 公正思想의 產物이라 할 수 있다.

라. 資本利子 制限의 原則

協同組合의 出資金은 組合員의 人格에 부수되는 地位일뿐, 株式會社의 投資와 다르다. 그러므로 資本(出資金)에 대한 配當은 하지 않는 代身, 利子만을 支給하되, 利用配當의 경우보다 낮아야함은 물론이다.

마. 教育促進의 原則

協同組合은 단순한 經濟事業團體가 아니라, 人格團體이며, 人間의 利己心을 억제하고 協同心을 조장하여 至高한 協同社會의 理想을 實現하는 것이므로, 協同人의 資質을 向上시키는 教育활동은 다른 어느 原則보다도 重要한 原則이다.

바. 組合的 協同의 原則

이 원칙은 資本主義企業이 점차 垂直的 水平的으로 大規模化되면서 協同組合 活動에 압박을 加하게 되는데 對한 反動으로서, 協同組合도 그 内部的 協同의 段階를 넘어, 地方的, 全國的, 나아가 全世界的으로 各級 協同組合끼리 서로 協同해야한다는 原則이다.

내 뭇은 내게 다오

내 산밑에 땀막아 물고이게 해놓고
물세(水稅)는 받아가며 고마운줄 몰라하네
물(水)주인 누구인지 알아나 주려으나
一水源涵養 保安林